

# 순천대학교 특성화사업 운영 규정

제정 2014. 11. 11.

개정 2016. 8. 25.

개정 2016. 11. 2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(이하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정한 대학 특성화 분야의 발전과 지방대학특성화사업(CK- I)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대학교의 특성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

**제3조(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)** ① 이 대학교의 특성화사업 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(이하“사업추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(개정 2016. 8. 25.)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기획부처장, 특성화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, 사업단장과 지방자치단체·산업체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학내·외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(개정 2016. 8. 25, 2016. 11. 21.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
2. 사업 계획의 주요사항 변경
3. 사업 예·결산
4. 사업 운영 규정 개정 및 폐지
5. 그 밖에 이 대학교의 특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4조(전담조직)** ① 이 대학교의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획처 내에 특성화사업관리본부(이하“사업관리본부”라 한다)를 두며, 하부조직으로 사업단과 사업지원부를 둔다.

-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, 사업관리부분부장은 기획부처장으로 한다.
-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관리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④ 사업지원부에는 부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부장은 기획평가과장으로 한다.
- ⑤ 사업관리본부에 사업단장 등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사업단)**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사업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광양만권 경제특구 비즈니스 MASTER사업단
- 2. 지역산업을 연계한 창조형 에너지·자동화설비인력양성사업단
- 3. (삭제 2016. 11. 21.)
- 4. 지역창조 공공인재양성사업단
- 5. (삭제 2016. 11. 21.)
- 6. 생물소재 발굴·활용사업단
- 7. (삭제 2016. 11. 21.)
- 8. (삭제 2016. 11. 21.)
- 9. 스마트농식품산업융합인재양성사업단(신설 2016. 11. 21.)

**제6조(기능)** 사업관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사업 지원·육성 계획
- 2.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을 통한 특성화 기반 구축
- 3.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
- 4. 산학협력 및 취·창업 사업 지원
- 5. 대학 특성화 관련 예산안 편성 및 집행
- 6. 그 밖에 이 대학교의 특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**제7조(임무)**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이 대학교 특성화사업을 총괄하며, 사업관리부분부장은 사업관리본부장을 보좌하고, 사업관리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사업단장은 참여 학사조직의 관리·운영과 연차별 사업계획서 이행업무를 수행하며,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소속 대학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사업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지원부장은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8조(재정 및 회계)** ① 사업관리본부의 재정 수입금은 국고지원금과 대학 자체

지원금으로 하며, 국고지원금은 이 대학교 대학회계에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한다.  
(개정 2016. 8. 25.)

② 사업관리본부의 회계는 이 대학교 대학회계 관련 규정과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관리지침 등을 따른다. (개정 2016. 8. 25.)

**제9조(자체평가)**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특성화사업 수행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사업관리본부장은 사업단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행·재정적인 지원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10조(자료의 제출)** 사업단장은 특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관리본부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전담인력)** 사업관리본부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.

**제12조(운영세칙 등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관리본부장이 따로 정한다

#### 부 칙(2014. 11. 11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(2016. 8. 2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16. 11. 2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